

# 사료산업의 발전방향

---

안 호 근 과 장

농림부 축산물위생과

## Brief Curriculum vitae

- ▶ 1985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
- ▶ 1987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석사  
George Washington Univ. 경제학석사과정 수료
- ▶ 1987 제29회 행정고시 합격
- ▶ 1987 행정사무관
- ▶ 1996 서기관,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
- ▶ 1998~2000 UN 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사무소 파견
- ▶ 2000~2001 농림부 정보화담당관
- ▶ 2001~2002 장관 비서관
- ▶ 2002~2003 농림부 통상협력과장
- ▶ 2003~현재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



## 사료산업의 발전방향

안 호 근 과장 / 농림부 축산물위생과

### I. 사료산업 일반현황

#### 1. 발전과정

##### □ 유치단계 (1960년대)

- 원료의 원시적 단순가공단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료공장 출범 시기
- 사료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 마련
  - '61년도를 기점으로 사료수급계획 수립제도 실시
  - 배합사료 원료 조달을 위한 정부관리양곡부산물취급요강 제정
  - 미 잉여농산물 공여계획(PL480 Program)에 따라 사료용 곡물수입
  - 사료관리법령·사료검사업무취급요령 및 배합사료 공정규격 제정

##### □ 고도성장단계 (1970~1980년대 중반)

-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사료산업의 양적성장시대로 접어들
  - 배합사료 생산량 : ('70) 508 → ('75) 901 → ('80) 3,462 → ('85) 6,457천톤
- 소득수준 향상과 축산물 수요증가로 사료산업의 발전 가속화
- 근대적 사료제조시설 도입, 단미·보조사료 수입의존도 증가
- 사료곡물 수입 급증으로 사료공장은 인천·부산 등 임해지역으로 집중
  - 도시화로 지가·노임상승, 공해발생, 판매수송의 원거리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 대두

□ **안정성장단계 (1980년대말~현재)**

- 양적성장으로 사료의 과잉공급과 사료곡물의 해외 의존도 심화
  - 수입선의 다변화 시책 전개,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양적성장 둔화
- 관세 및 부가세의 감면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요구
- 사료원료의 공동구매에서 벗어나 점차 개별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선물거래 등에 참여하는 기업 증가
- 가루사료 중심에서 펠렛, 후레이크 사료로 바뀌고 포장형태도 점차 산물(벌크) 형태로 전환, 판매경쟁 치열, 물류비용 문제 대두
-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의 품질관리 중요성 대두
- 농가 자가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 이용 증가 추세

2. 사료생산 및 가격동향

□ 배합사료공장은 '95년 83개소에서 '00년 98개소로 15개소 증가되었다가 현재 92개소 유지, 단미·보조사료공장 증가세

- 배합사료 : ('95) 83 → ('00) 98 → ('01) 95 → ('02) 92개소
- 단미사료 : ('95) 239 → ('00) 466 → ('01) 476 → ('02) 505개소
- 보조사료 : ('95) 26 → ('00) 124 → ('01) 200 → ('02) 311개소

※ '99년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동물약품·첨가제 등이 단미·보조사료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동 제조업체 증가

□ 배합사료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여 '97년 최대 1,600만톤까지 증가, '98년 IMF 당시 1,425만톤까지 감소, 지난해 1,580만톤으로 회복

- 축종별 사료생산량은 양돈·양계용 사료가 전체의 63%(2002년) 차지, 전반적으로 낙농·비육우용 생산량은 감소, 양계·양돈, 기타 가축용 사료 생산량은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

※ 금년은 전년보다 1~2% 감소한 1,550만톤 생산 전망

- 전체 배합사료 생산·유통량중 농축협에서 27% 차지, 나머지 73%는 일반 사료업체에서 생산·유통
  - 농협점유비 : ('90) 19.4% → ('95) 24.2 → ('00) 26.7 → ('02) 27.4
  
- 사료원료 구매는 계속증가하여 '95년까지 1,296만톤까지 증가, '98년 IMF로 1,238만톤까지 감소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1,400만톤을 상회
  - 원료 중 옥수수 50%, 기타 대두·강피류 등이 37% 수준
  
- 옥수수, 대두박, 소맥 등 주요원료의 가격은 '02년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세 지속
  - 옥수수 : ('02년 평균) 106\$/톤 → ('03.3) 117 → ('03.6) 114 → (03.8)119
  - 소 맥 : ('02년 평균) 100\$/톤 → ('03.3) 99 → ('03.6) 107 → (03.8)123
  - 대두박 : ('02년 평균) 193\$/톤 → ('03.3) 215 → ('03.6) 209 → (03.8)229

## II. 주요 추진시책

### 1. 사료 생산원가 및 가축생산비 절감

- '88년부터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
  -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수수, 소맥 등 주요 수입사료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
    - 2002년부터 1년단위로 세율 및 한계수량 결정(관세법 시행령 개정, 재경부, '01.12.31)
  - 현재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배합사료 원료중 중요도가 높고 배합사료 원가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
    - <2002~2003 대상품목 : 11품목>
      - 0% : 옥수수(잠정 3%), 대두(기본 5%),

- 1% : 소맥(잡정 3%), 알팔파(협력 14%)
- 2~3% : 채종박, 면실박, 타피오카펠리트, 밀기울, 겉보리
- 5% : 동물성유지, 유장

□ 사료원료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여 안정적 공급

-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사료원료는 10개 품목 (유장, 타피오카, 옥수수, 대두, 사료용근채류, 골분·육골분, 참깨유박, 기타배합사료, 보조사료, 겉보리)으로 이중 3개 품목 증량

<2003년 대상 품목>

- 옥수수 : (C/S) 4,721천톤 → (증량) 3,379 → (계) 8,100
- 사료용근채류 : (C/S) 31천톤 → (증량) 464 → (계) 495
- 보조사료 : (C/S) 4천톤 → (증량) 26 → (계) 30

※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품목과 할당관세 적용물량이 부족한 품목은 증량운영

□ 사료원료 구매자금 등의 지원을 통한 제조업체 경영안정

- WTO 출범이후 사료산업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따른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지원
- 지원실적 : ('01) 307 → ('02) 246 → ('03) 427억원
- 지원조건 : 연리 5.5%, 1년 거치 일시상환

□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생산비 절감

- '95. 10월부터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등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관계법령을 개정, 양축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이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- '95.10 : 부업규모 축산농가에 적용
- '96.01 : 부업규모의 120% 범위안의 축산농가에 적용

- '97.07 :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까지 확대 적용하고, 단미·보조사료까지 확대

※ 부가가치세 감면액(추정) : 연간 약 4,500억원 수준

○ **가축계열화사업자 사료영세율 적용범위 요건 완화**

- 부가세영세율적용관련 「특례규정」 개정고시(재정부, 2003.12.31)

① **계열화사업자의 범위**

- (종전) 농민에게 **가축을 위탁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**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
- (완화)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하여 사육(위탁사육)하거나 농민과 **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(계약사육)**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

② **축산업 수입액의 범위**

- (종전) 계열주체가 **직접 또는 위탁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을 가공·판매한 경우에는 축산업 수입**으로 인정
- (완화) 계열주체가 직접 또는 계열농가의 가축과 일반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가공·판매하는 경우를 **축산업 수입금액**으로 인정

③ **총 매출액중 축산업 수입액 비율**

- (종전) ① 직전 사업연도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**100분의 90** 이상인 경우 ② 당해 사업연도의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
- (완화)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**100분의 70** 이상인 경우

※ 부가가치세 영세율 현장 적용을 위한 「**가축계열화사업자범위 및 지정방법 고시**」(농림부고시 제2003-10호, '03.3.11)

□ **사료제조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**

-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양축가, 섬유질사료 제조업체 등에

###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시설비 지원

- 지원실적 : ('01) 9 → ('02) 22 → ('03) 18억원
- 지원조건 : 연리 5%, 3년거치 7년균분상환
- 농산부산물 및 식품부산물 등 부존자원의 활용도제고와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혼합기·분쇄기 등 자가배합제조시설비 지원
- 지원실적 : ('01) 23 → ('02) 19억원
- 지원조건 : 연리 5%, 3년거치 7년균분상환
- ※ 농가에 지원하던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경영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

## 2.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향상

### □ 사료내 위해요소 등 혼입방지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(2001.3.28)

- 인체·동물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동물 부산물 등을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사료가 공급되도록 함
- 인체·동물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는 사료의 범위와 급여금지 대상 동물의 종류 고시를 위한 근거 기준 마련(법 제13조)
- 사료의 품질관리강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 제도 도입(법 제14조)
- 사료의 원료관리·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우수제조 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및GMP)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(법 제15조)
- 사료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료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사료제조업자 등은 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(법 제21조)

- 남은음식물로 생산된 사료 등을 판매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(법 제2조)
  - 남은음식물사료 등을 반추가축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농가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(법 제25조)
  - 초식동물에 동물성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, 소 등 반추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사료 사용을 금지함(법 제13조)
- 광우병 발생·전이 개연성이 있는 수입사료를 관세청장 요건확인 품목으로 지정·관리(사료검사요령 제17조 및 제24조)
- HS-Code상 56개 사료를 BSE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의무화(신고기관 : 사료협회, 단미사료협회, 농협중앙분석소)
  - BSE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·확인절차 및 수입신고 등 세부적인 수입관리 요령을 통합공고에 반영
-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정고시('01.10.5)
-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금지한 반추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
    - 동물성 단백질류 :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·제각분·육분·육골분·수지박·육즙흡착사료·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·도축부산물·혈분·피혁가공분말·육가공부산물·동물성발효사료·가수분해 및 유도 단백질
    - 동물성 무기물 :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·골회
    - 상기의 동물성 단백질류·무기물이 포함된 배합사료
    - 남은음식물사료
  -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℃에서 30분 이상 가열·처리하여야 하며, 가열·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·관리하여야 함

- 다만, 돼지사료 또는 돼지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℃(심부 온도기준)에서 30분이상 가열·처리하여야 함

□ 사료관리법시행령 개정('01.10.31)

- 사료중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남은음식물사료 및 미량광물질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**사료안전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**

□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('01.12.31)

- 남은음식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의 시설기준중 **가열시설의 기준을 100℃에서 30분이상 가열(단, 돼지전용사료는 80℃에서 30분이상)로 구체화**
-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사료는 반추가축에게 사용 또는 급여금지하는 내용을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
-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**동물성사료 비사용증명서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**하고, 수입신고대상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함

□ 사료공정서 제정('02.1.19)

-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**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사료 공정상 설정된 사료에 포함함**
-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생산·유통이 가능하도록 **“유기배합사료”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**
- 합성으로 제조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사료만을 사용하도록 그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하고,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품목을 일부 조정함
- 농가 또는 식품제조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어 사료로서 성분등록을 할 수

없는 쌀겨, 밀기울, 볏짚 등은 성분등록 대상사료에서 제외

- 사료의 안전성 관련 일부 성분과 사료의 범위에 추가된 사료의 성분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분석방법을 추가함

#### □ 사료검사요령 개정('02.3.9)

-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사료검사원은 농림부, 시·도는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, 사료관련단체의 소속 직원은 신청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
- 현물검사에 채취하는 시료로서의 대표성 및 유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의 일반기준을 마련하여 사료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게 함
- 국내 BSE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 국가 등에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등이 함유 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사료관련단체에 제출토록 함
- 사료검정의 합리적,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사료 재검사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료검사가 되도록 함
- 수입신고 대상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협중앙회,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각각 권한을 위탁함
- 수입신고 대상사료와 사료관련단체가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한 사료의 검정절차, 검정결과 위배된 사료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입사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함

#### □ 사료검정 분석장비 지원

- 수입사료검정기관(한국사료협회)에 사료검정에 필요한 분석장비 구입비 지원
  - 2002년 지원액 : 3종 3대 185백만원
  - 아미노산분석기, 곰팡이독소측정기, 농약분석기

□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외국에서 배합사료에 첨가하지 아니한 품목을 사용 금지

-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(농림부고시) 개정('02.10.5)하여 동 품목을 삭제
  - 금지품목 : 스피라마이신, 스텍티노마이신, 아보파신, 오라퀸독스, 아프리 노시드
- 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세레늄의 허용기준 강화
  - 세레늄 허용기준 : (현행) 2~4ppm → (개정) 2ppm
- 카드뮴 허용기준 적용대상 보완
  - 카드뮴 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양어용배합사료 및 배합사료원료용 어분을 제외

< 추진성과 >

□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및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가격안정에 기여

- '88년부터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연간 약 300억원 내외의 사료생산 원가 절감
- '95년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4천억원의 부가세 감면으로 비용절감 효과 거양

□ '96~2002년까지 사료원료구매자금(2,330억원)지원으로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 및 사료업체 경영부담 경감

- 연평균 466억원을 지원하여 제조업체 경영안정에 기여

□ '93년부터 농가·생산자단체 등에 사료제조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,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

- 섬유질제조사료시설비('93~2002) : 51개소, 138억원
- 자가배합사료시설비('98~2002) : 239개소, 197억원

- 규제완화를 위해 사료제조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 유도, 등록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
  - '94년 사료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 전환하여 사료생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, 사료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여 자유업으로 전환
  - '99년 배합사료제조업 등록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
  
- 사료관리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, 안전한 축산물 생산·공급에 기여, 사료로 인한 가축질병 발생요인 사전 예방효과 거양

### Ⅲ. 향후전망과 추진과제

#### 【 전 망 】

- 사료수요는 축산물 수입개방과 환경문제 등으로 현행유지 전망
  - DDA협상결과 추가 관세인하로 축산물 수입량 증가, 환경문제 등에 의한 규제강화로 사육두수 증가는 둔화 전망
  
- 국내외 다양한 여건변화로 원료공급 및 가격 불안요인 잠재
  - 국제경기, 환율등락, 기후·환경변화 생산량 감소 요인 등
    - 사료원료의 수입 의존도는 평균 90%이상
  
- 사료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
  - 농가는 고품질의 사료를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 요구 증대
  - Codex 등 세계적으로 사료안전성 관련 규정 강화추세,
    - 사료내 유해물질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 등의 허용기준 강화 추세
  - 유전자변형(LMO) 사료의 라벨링 문제 등 규제강화 가속화

- 사료로 인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
  - 질병발생 개연성이 있는 동물성사료 등의 관리강화 필요성 대두

**【 주요 추진과제 】**

-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
  
-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안전 축산물 생산·공급
  - 사료에 HACCP 및 GMP제도 도입으로 위해요소 오염차단
  - 사료내 유해물질 허용기준 설정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
  - 단미사료별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
  - 유전자변형사료(LMO)의 동물위해성 평가지침 마련 등
  
- 가축질병 발생 개연성 사료의 관리 강화
  - 반추수유래동물성사료 등 관리강화 시스템 구축
    - 사료내 동물성사료 검사법 도입 등으로 소 등 반추가축사료에 동물성사료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

**IV. 사료산업 발전방안**

< 추진방향 >

- ◇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
- ◇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
- ◇ 가축의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사료의 관리강화

**1. 안정적 원료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**

- 공동구매 확대 권장 등으로 발생비용 절감 유도

-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확대 : 30% → 곡류 70%, 기타 50%
- 사료관련단체간의 공동구매 체계 확립
- 환율 및 국제원료 가격동향 분석을 통한 원료의 적기 구매

□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(양허, 기본)인하, 장기적으로 무관세 추진

- 기본관세율 개편 이전까지 **할당관세 및 양허관세제도** 운용 → 국내 사료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품목 위주
  - ※ 2004년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('03.10~12)
- 장기적으로 **기본관세 인하** 및 주요 사료원료의 무관세를 적용토록 추진(DDA 협상과 연계추진)

□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속 지원

- 향후 국제곡물생산 및 가격불안 등에 대비하여 사료원료의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
  - 지원규모 : (2002) 246 → (2003계획) 427억원

□ 국내부존자원 활용도 제고, 해외사료자원의 수입선 등 다변화

- 사료원료 수출국을 적극적인 발굴 : 품목당 3개국 이상
- 곡물원료 보다는 기타 사료자원 개발에 중점
- 수출국의 생산자단체, 곡물메이저 등 국내 사료공급상사를 통하여 새로운 품목 개발

2. 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

□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GMP 및 HACCP) 도입

- 사료관리법을 개정, 제도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('01.3)
- 사료의 원료관리·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의 혼입 또는 오

염을 방지할 위한 제도시행을 위해 연구과제 추진 중

- 연구기간 : 2001.11~2003.10(2년간)

- 기획연구과제가 나올 경우 현장 검증과정을 거쳐 현실적인 기준 마련후 제도 도입

□ **유해물질의 허용기준설정 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**

- 현재, 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상 중금속(비소 등 8종)과 곰팡이독소(아플라톡신B1)만 설정하여 운용
- 선진국은 다이옥신, 곰팡이독소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대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

□ **단미사료별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 관리 강화**

- 현재,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배합사료에 파라치온, 다이아지논, 디디티(DDT)등 18종의 농약만이 설정
- 옥수수 등 원료상태의 잔류농약 검사도 중요하므로 **단미사료별** 잔류농약 허용기준 마련

□ **사료검정장비 지원, 사료검사강화 등**

- 수입사료검정기관(사료협회 등)에 사료검정에 필요한 분석장비를 지원하여 사료관리 강화로 안전성 제고
  - 지원액 : (2002) 185 → (2003) 270백만원(한국단미사료협회)
- 사료제조업체에 **사료안전 관리인 배치** 의무화
- 분기별 사료검사 실시로 사료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

□ **유전자변형사료(GMO)의 관리강화**

- '01.1월 「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」가 채택된 이후 50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'03.9.11부터 효력 발생

- 외통부는 동 의정서의 국내비준 11.20 이전에 완료하기를 희망
- ※ 비준서 기탁후 90일후 동 의정서 및 국내 시행법률 동시발효
- “유전자변형생물체(LMO)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”(‘01.3월제정,산자부) 동 의정서가 ’03.11월 국회에서 비준되면 ’04.2월 시행예정
- 동 법은 식용·사료용·환경방출용 LMO는 환경위해성평가를 거쳐 사전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정(단, 증식기능 상실 제품 제외)
- 우리부는 「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평가 심사지침」을 제정(’02.1), 임의규정으로 시행중이나 현재까지 심사신청사례 없음
- 수입대행업체에서 환경위해성평가 심사자료를 10월초까지 제출할 경우 내년 2월까지 심사 완료 계획(농진청)
- 사료곡물 수입대행업체에 심사자료를 10월초까지 제출 촉구

◇ LMO사료의 동물위해성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가축의 위해방지 및 소비자 요구를 감안하여 도입 검토

- 평가지침을 마련, 2~3년간 임의규정으로 실시한 다음 사료관리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강제규정으로 전환 검토
- ※ 일본·EU 등은 현재 LMO 사료의 동물위해성평가 실시중

### 3.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료관리 강화

#### □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등 개정고시(’03.9)

- 광우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국제기구(OIE)와 EU·일본 등에서 반추동물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와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등 3개 고시에 반영, 동물성사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, EU의 국가별 광우병 평가(GBR)에 대비하기 위함

#### 【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】

-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금지 사료를 추가하여 관리 강화

- (현행) : 동물성단백질사료(반추수유래 육분·육골분 등)·동물성무기물사료(골분·골회)·남은음식물사료
- (추가) : 인산2칼슘(광물에서 유래한것,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)·동물성유지·어분·어즙흡착사료·어류가공품 및 부산물·젤라틴 및 콜라겐
- 동물성사료 생산라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사료 등도 반추동물에 급여 금지

### 【 사료공정서 】

- 광우병 예방을 위해 제조·수입·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신설
  - 반추동물사료 제조업체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
  - 반추동물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지정된 차량만 사용
  - 반추동물사료 운반시 지정된 톤백과 지대포장 사용 의무화
  - 순수 비반추동물성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사료로 제조·공급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, “확인받은 사료” 표시 의무화
  - 육골분사료 제조시 원료를 가열처리 전에 50mm입자로 절단 후 제조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되도록 함
  - 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사료의 혼입여부 검사를 위한 검사법 도입
    - 현미경검사법, ELISA(효소면역측정검사법), PCR(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법)

### 【 사료검사요령 】

-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사료검사요령 강화
  - 제조업체로 하여금 원료수불대장·생산 및 판매대장 등 동물성사료의 사용·추적에 필요한 장부를 8년간 보관 의무화
    -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상기 장부 등을 확인토록 함
  - 제조업체는 “동물성사료 혼입여부”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이상 실시 의무화

- 수입되는 모든 동물성단미사료를 정밀검사대상에 포함
- 수입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정품목 추가
  - 수입신고대상(HS10단위) : (현행) 187개 → (확대) 223개(증36)

□ 남은음식물을 원형상태로 농가에 공급 금지

- 광우병 예방관련 남은음식물관리방안 수립('03.2.18)
-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요청('03.3.6)
  - 배출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직접공급 금지
- 환경부,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(안) 마련('03.6.16)
  -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(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)
    - ※ 개정(안) :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유해사료의범위와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농가에 공급 금지
    - 시행일 : 특별시·광역시 2006.1.1일부터 그외의 지역은 2007.1.1부터 시행